

가정통신문

지평선고 제 2020-62호

교무실 : 063-544-3155
행정실 : 063-544-3154
팩 스 : 063-544-3151
http://www.jipyeongseon.kr/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의 3(상당 지원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 **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(학생,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)**뿐만 아니라 그 **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)**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**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**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신청 절차, 처리 과정, 신청시 필요한 양식을 안내합니다.

1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(서식1, 서식2)를 작성하여 제출
 - ※ 제출서류 :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
- 학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 라 함)에 지원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

<학교장 확인 사항>

- ▶ 적법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
- ▶ 적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, 적법한 대리권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)
- ▶ 치료대상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그 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)에 해당하는지 여부

※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학교장은 신청서류 반려 가능

2. 신청서 접수

- 공제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한 후,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‘자문위원회’에 심의 개최 요청

<공제회 확인 사항>

- ▶ 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
- ▶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
- ▶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관계

※ 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

인에게 개별 연락·요청

3. 자문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

- 자문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,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

4. 지원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

-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,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 및 공제회에 통보
- 학교장은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치료비 신청 절차* 등 안내
 - *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원 신청함으로써 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(붙임) 등

5.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

-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 진행한 후 그 치료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공제회에 신청하면, 공제회가 해당 치료비를 지급

6. 치료비용 지급사실 통보

- 공제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지급한 후, 교육감에게 지급사실(지급액 포함)을 통보
 - ※ 교육감은 향후 정산과정을 거쳐 공제회에서 지출한 비용(공제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용)을 보전

7.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신청

-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,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연장 신청(이하 상담지원 등에 대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)

2020년 9월 21일
지 평 선 고 등 학 교

■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

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(지원·연장) 신청서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, 다음과 같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(연장)을 신청합니다.

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귀중

신청인 (지원대상자)	성 명	(인)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피공제자와의 관계	
	신청사유			
	신청인의 지원 비용 수령 계좌			
은 행 명		계좌번호		예금주

공제가입자	학 교 명			
피공제자 (사고학생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학교안전사 고 개 요	발생일시		발생장소	
	사고 내용			

본인은 지급절차에 관한 정보(연락처, 지급절차 등)와 별지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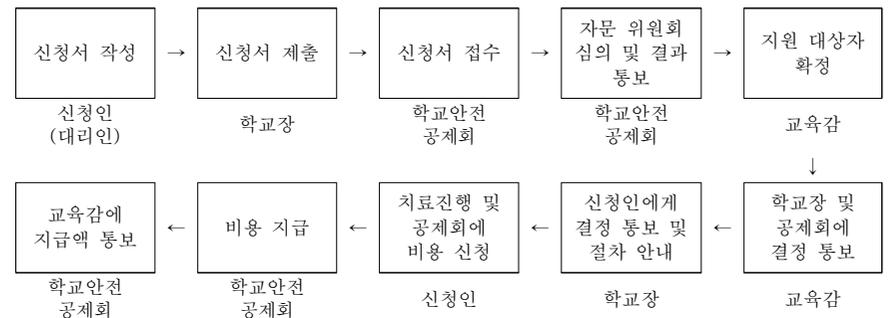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(연장)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인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며, 학교장은 이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위임장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·도면·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-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(연장) 신청 시,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(연장) 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신청인 제출서류(각 1부)	비고
지원신청	1.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(필수) 2. 치료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(필수) 3. 피공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필수) 예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. 정신보건 임상심리사(1급)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서·상담기록(선택)	
연장신청	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,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(필수) 2. 상담사에게 치료받은 경우, 상담사의 소견서 및 상담기록과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필수)	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(서식2)

개인정보의 제공 · 활용 동의서			
사고발생번호		학교명	
피공제자		주민등록번호	
신청인		주민등록번호	
<p>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, 피공제자 본인(또는 법정대리인)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(이하 심리상담자문위원회)의 심의를 위한 항목으로써 업무처리 외의 용도로 이용 · 제공되지 않습니다. 해당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심의 및 치료비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p>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(제3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무법인(변호사), 의료자문기관 및 의료기관(전문의), 공공기관(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), 업무수탁자 등(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법인 등) 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무법인(변호사) : 심리상담 비용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 ○ 의료자문기관 및 (전문의) : 심리상담 비용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의학적 검토 ○ 공공기관 등 : 「의료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○ 업무수탁자 등 : 심리상담자문위원회 심의를 위한 업무 [사고 조사업체, 손해사정법인, 의료기관(전문의), 법무법인(변호사) 등] 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연락처 등 ○ 학교안전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 ○ 요양기관의 진료기록, 방사선필름, 진료비내역 등 ○ 기타 관련 의료 및 상담기록 등 			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· 이용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			
<p>신청인 : (인)</p> <p>피공제자와의관계 :</p> <p>생년월일 :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년 월 일</p>			
<p>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귀하</p>			

[붙임]

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

지역	기관명	주소	연락처
전주	마음상담코칭센터	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8-1	010-6215-6595
전주	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	전주시 완산구 효자 1가 454-3	063-224-8338
전주	씩 심리 상담센터	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90	063-225-1400
전주	온다라 심리교육 상담실	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	010-3657-7387
전주	지안 심리연구소	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7-5 3층	1544-0744
전주	하람 심리 상담센터	전주시 덕진구 안골 3길 8-4	063-247-5543
전주	해읍 심리 상담센터	전주시 완산구 감나무 2길 3	010-9660-3131
군산	그린맘 심리발달연구소	군산시 월명로 215	063-466-6454
남원	에덴상담심리연구센터	남원시 성황단길 10 2층	063-625-2012
익산	물구나무 심리상담센터	익산시 익산대로 16길 24	063-857-8540
익산	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	익산시 동서로 116	010-3650-5923
익산	(유)예술컴퍼니아트문	익산시 동서로 222	063-855-0423
익산	호남 뮤직테라피연구소	익산시 영등동 신일APT 105/102	010-7343-9775

※ 상담 및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**의료기관(정신과)** 또는 **위 심리상담 기관**에서 상담 · 치료를 받아야함.
 ※ 의료기관 외의 심리상담기관(센터, 연구소 등)에서 상담 등을 받을 경우 위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서 치료 받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